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414
----------	---------

제안년월일 : 2020년 4월 23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현행 조례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만으로도 1급지를 제외한 전체 시 공영주차장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 개정조례안 적용시 요금할인이 되는 대상 주차장의 수가 전통시장에 이웃한 서울시 공영주차장으로 한정되어 현행조례에 비해 대상주차장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점과 1급지로 선정된 지역은 주차장 이용을 줄여 교통혼잡을 완화하려는 서울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 전통시장 이용을 통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공영주차장 범위 확대와 할인율을 높이되, 1급지 주차장은 할인혜택 주차장에서 제외하여 주차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가. 전통시장 이용실적을 통해 1급지에 소재한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공영주차장에 대해 최초 2시간까지 요금의 50%를 할인하는 규정을 마련 (안 제7조)

3. 참고 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같은조 같은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안 같은조 같은항 제9호를 제8호로 다음과 같이 하며, 안 같은조 같은항 제10호에서 12호를 각각 제9호에서 제11호로 한다.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에서 구매한 영수증 제시 또는 구매한 사실이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해 확인된 차량이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의원발의안)	수정안(전문위원실안)
<p>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p> <p>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6. <u>시장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u></p> <p>7·8. (생략)</p> <p>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인근에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구매 영수증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할인한다.</p> <p>10. ~ 12. (생략)</p> <p>②·③ (생략)</p>	<p>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7·8. (현행과 같음)</p> <p>9. ----- -----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에 있거나 이웃한 ----- ----- 전통시장 등에서 구매한 -- 대하여 ----- ----- -----</p> <p>10. ~ 12.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p> <p>① <u>(개정안과 같음)</u></p> <p>1. ~ 5. (개정안과 같음)</p> <p><u>(개정안과 같음)</u></p> <p>6·7. <u>(개정안과 같음)</u></p> <p>8. ----- -----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에서 구매한 영수증 제시 또는 구매한 사실이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해 확인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p> <p>9. ~ 11. (개정안과 같음)</p> <p>②·③ <u>(개정안과 같음)</u></p>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조 같은 항 제9호를 제8호로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10호에서 12호를 각각 제9호에서 제11호로 한다.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에서 구매한 영수증 제시 또는 구매한 사실이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해 확인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u>6. 시장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u></p> <p>7. · 8. (생략)</p> <p>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인근에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구매 영수증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할인한다.</p> <p>10. ~ 12. (생략)</p> <p>② · ③ (생략)</p>	<p>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u>< 삭제 ></u></p> <p>6. · 7. (현행 제7·8호와 같음)</p> <p>8. ----- -----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에서 구매한 영수증 제시 또는 구매한 사실이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해 확인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p> <p>9. ~ 11. (현행 제10~12호와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